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06호 2011. 1. 24.(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3호 2011년 숲가꾸기사업 사업(추가분 2차) 시행
공고 ----- 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9호 신조 공인 공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00호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인력 채용 공고 ----- 3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1.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 나.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상 근거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성·운영 등이 다른 위원회이므로 존치하되, 설립근거규정 일부분구정비(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24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1년차분”을 “1년차의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당 사무관 확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 (제보자)			세목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당 사무관 확인	포상금	지급일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 조 :

발 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 첨부 : 1.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1부.
 3. 포상금지급신청서, 숨은세원발굴내역(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부표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신청자			징수(세 원 발 글)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 비고란에 포상금지급 적용기준조항 등을 기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12.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세무조사운영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전 → 10일전), 세무조사기간(규정 없음 → 20일 이내)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외요건 개정내용 등 정비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30조)

나. 지방세관계 분법개정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별지 서식 정비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조문정리(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FAX : 560-4199】 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수정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전에”를 “10일 전에”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기간”을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변호사 등”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으로 하고, “입회하거나”를 “참석하거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2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인천광역시 서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취득세팀)
 우편번호 : 404-701

※ 문의사항 전화 : (032) 560-4210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배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9-4)

서식목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9-5)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9-6)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a)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 액 (d)	기납부 세 액 ①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b)					

(9-7)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m²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m²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9-8)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3월 (정산)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차량															
	㉡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9-9)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3호

2011년 숲가꾸기사업 사업(추가분 2차) 시행 공고

2011년 숲가꾸기 사업 면적 증가에 따른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소재불명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1. 1.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사 업 명 : 2011년 숲가꾸기 사업(추가분 2차)
2.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임내정리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육성 등 산림기능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
3.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1. 1. 20 ~ 2011. 2. 7 (19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본 공고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내 이의신청
 - 나.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6. 기타사항
 - 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 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 녹지조경팀(☎ 032-560-4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추가분 2차) 조서 1부. 끝.

2011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현황(2차 추가분 공고)

임반/소반 지번	읍·면·동			지 적 (㎡)	작업면적 (ha)	공고현황	소유자	
							주 소	성 명
	가정동	산 21	-2	82,205		신규공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728-36 현대반포빌라A-301호	김세민
	가정동	산 21	-1	65,983		신규공고	-	국(국방부)
	가정동	산 21	-9	23,448		신규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74-5 경남아파트 406동 1301호	윤진하
	가정동	산 20	-1	49,265		신규공고	-	인천직할시
	가정동	산 20	-4	3,306		신규공고	인천 중구 관동 3가 1	유조파
	가정동	산 22	-1	15,401		신규공고	-	산림청
	가정동	341	-31임	5,929		신규공고	노원구 상계동 685 보람아파트 101동 1409호	박해숙
	가정동	341	-32임	2,767		신규공고	노원구 상계동 685 보람아파트 101동 1409호	박해숙
	가정동	341	-33임	7,402		신규공고	노원구 상계동 685 보람아파트 101동 1409호	박해숙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9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인증기 구입(신현원창동)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1년 1월 31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신조 공인명	규 격(cm ²)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신현원창동민원전용2 (인증기)	2.4×2.4		인증기 구입
신현원창동장인 /민원전용2 (인증기)	2.1×2.1		인증기 구입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2011-100호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인력 채용 공고

201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GIS) DB갱신 전문인력 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부분

GIS DB(하수, 도로, 녹지,교통 분야)입력 전문기술자

2. 채용기간

채용일 ~ 2011년 12월31일

3. 모집인원 : 1명

4.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1989.01.01이전 출생자
 - 나.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거주
 -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라. 다음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자
 - 1) GIS 관련학과 2년 이상의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 GIS관련학과 : 지리정보·토목·지적 관련과
- 2) 정보처리산업기사소지자

5. 가점부여

다음 자격 조건 중 최고 점수 1종 하나

- 가. GIS 관련프로젝트 및 연구 수행경험 1년 이상인자 (+4점)
- 나. GIS S/W, ORACLE 교육이수자(+1점)
- 다. CAD 자격증 소지자 (+2점)
- 라.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 기사, 토목산업기사이상 소지자(1개이상)
- 마. 동일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1년이상 ~ 2년미만 : 2점
 - 경력 2년이상 : 4점

6. 전형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이력서 · 자기소개서(A4 1장) 1부
- 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 지참
- 마.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바. 주민등록 등·초본 1부

8.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제출기간 : 2011.02.07(월) ~ 2011.02.11(금)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10.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치수관리팀

11. 면접일 : 2011. 02. 16(수) 10:00

※ 서류합격자 면접 및 장소 개별통보

12.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02. 18(금)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13. 채용관련 문의처 :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032-560-4532)